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8

발의연월일: 2024. 7. 26.

발 의 자:한기호·김종양·김은혜

주진우 · 강선영 · 김성원

유한홍 • 김정재 • 유용원

신성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는 경우, 장교후보생으로서의 훈련기간 동안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방부는 2022년부터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인 자에게도 군간부후보생 선발전형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과정에 입교하는 경우 준사관 또는 부사관과 달리 후보생 신분으로서의 보수액을 적용받게 되어 신분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장교에서 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된 이들의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 생으로서의 보수액만 지급받은 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보수액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

법률 제 호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장교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준사관이나 부사관"을 "장교,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 "장교후보생"을 각각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액 지급에 관한 특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액 지급은 이 법 시행 전에 병적이 전환된 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u>장교후보생</u> 등의 보수) ①	제20조(군간부후보생 등의 보수)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② <u>장교,</u> 준사관이나 부사관
<u>장교후보생</u> 으로 임명된 자에게	<u>군간부후보생</u>
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u>장교후</u>	
<u>보생</u> 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	<u> 군간부후보생</u>
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다.	